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

제 안 자 : 여성가족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생략) ② (생략)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u>3</u> <u>개월</u>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 <u>6</u> <u>개월</u>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19
----------	------

발의연월일 : 2024. 9. 20..

발 의 자 : 이병진 · 임미애 · 송옥주
윤후덕 · 권철승 · 한민수
이상식 · 한정애 · 민병덕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지속적인 위법 행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위반 행위 이후에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함.

법률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u>통보하여야</u> 한다.	제50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 ----- ----- ----- ----- ----- ----- ----- ----- ----- <u>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